

대법원 2008. 4. 11 선고 2008다7987, 2008다7994 판결 [2008다7987(본소)]

사해행위취소
2008다7994(반소) 건물명도
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

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 F

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. 12. 21. 선고 2007나8266(본소), 2007나8273(반소)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들이 부담한다.

이 유

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,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8.4.11.

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김황식 대법관 이홍훈